

2021년도 경인지방우정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

※ 적용시기 : 2021. 6.28. 입찰공고분 부터

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	공사기간	[간접노무비]		[기타경비]		공사규모 (추정가격)	[일반관리비]		[이윤] (노+경+일) x 율	[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]				[산업안전보건관리비]									
		(직노) x 율		(재+노) x 율			(재+노+경) x 율			(직접공사비) x 율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		(재+직노) x 율							
		건축	산업 설비 (건축)	건축	산업 설비 (건축)		건축 산업설비	전문- 전기·통신· 소방·기타		중간건설업		전문건설업		□ 도급자관급 포함		(재+직노+도급자관급) x 율과 (재+직노) x 율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		
5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3.0	13.0	5.8	5.8	5억 미만	6.0	6.0	15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안전관리비 대상액 ^{주)}	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				
	7~12개월 (365일)	13.1	13.1	5.8	5.8					건축공사	0.07	비계 구조물해체공사	0.68	5억 미만		일반건설공사(갑)	2.93						
	13~36개월 (1095일)	12.9	12.9	6.5	6.5					산업-설비공사	0.16	석공사, 시설물유지관리, 철근콘크리트공사, 가스시설공사(1층)	0.32	5억 ~ 50억 미만		일반건설공사(을)	3.09						
50억 - 3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2.5	12.5	6.6	6.6	30억 - 50억 미만	5.0	5.0	12.0			도장공사, 철강재설치공사		0.16	5억 ~ 50억 미만		중건설공사	3.43					
	7~12개월 (365일)	12.7	12.7	6.4	6.4							기계설비공사사업 및 그 외		0.10	5억 ~ 50억 미만		철도-궤도신설공사	2.45					
	13~36개월 (1095일)	12.6	12.6	7.1	7.1										5억 ~ 50억 미만		특수및기타건설공사(전기,통신 등)	1.85					
300억 - 10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2.1	12.1	7.1	7.1	50억 - 100억 미만	5.5	5.5	12.0			* 적용제외: 문화재수리공사, 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		50억 ~ 500억 미만		일반건설공사(갑)	1.86	5,349					
	7~12개월 (365일)	12.7	12.7	6.9	6.9							*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9-286호, 2019.6.19.)		50억 ~ 500억 미만		일반건설공사(을)	1.99	5,499					
	13~36개월 (1095일)	12.5	12.5	7.5	7.5									50억 ~ 500억 미만		중건설공사	2.35	5,400					
1000억 이상	6개월 이하 (183일)	12.1	12.1	7.0	7.0	300억 - 1000억 미만	5.0	5.0	10.0			* 적용제외: 문화재수리공사, 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		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	50억 ~ 500억 미만		철도-궤도신설공사	1.57	4,411				
	7~12개월 (365일)	12.7	12.7	7.0	7.0										50억 ~ 500억 미만		중건설공사	2.35	5,400				
	13~36개월 (1095일)	12.6	12.6	7.7	7.7										50억 ~ 500억 미만		철도-궤도신설공사	1.57	4,411				
1000억 이상	6개월 이하 (183일)	12.1	12.1	7.8	7.8	1000억 이상	4.5	4.5	9.0			* 적용제외: 문화재수리공사, 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	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50억 ~ 500억 미만		특수및기타건설공사(전기,통신 등)	1.20	3,250				
	7~12개월 (365일)	12.7	12.7	7.0	7.0										50억 ~ 500억 미만		일반건설공사(갑)	1.97					
	13~36개월 (1095일)	12.6	12.6	7.7	7.7										50억 ~ 500억 미만		일반건설공사(을)	2.10					
* 기타경비항목: 수도광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, 여비·교통·통신비, 세공과공과, 도시설 □ 산업설비(건축) 해당공종: 지열공사, 소각시설 등						* 적용제외: 문화재수리공사, 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 *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9-286호, 2019.6.19.)						* 총 공사금액(도급금액+도급자관급금액)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주) 안전관리비(산업안전보건관리비) 대상액 -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: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-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: 재료비(도급자관급 포함)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또는 재료비(도급자관급 제외)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* 건설업의 분류 - [일반건설공사(갑)] 건축건설, 교량건설, 도로신설, 철도-궤도의 보수복구, 기설로면에 레 부설하는 공사 - [일반건설공사(을)] 기계장치공사, 석도건설공사 - [중건설공사] 고제방(높이20m이상의 제방, 방파제, 안벽), 수력발전시설, 터널(지하10 복개식 지하철도, 지하도,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들) 신설공사 - [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] 철도, 궤도시설(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) 및 그에 따른 역 과선교, 승선선로 - [특수 및 기타건설공사(단독발주에 한함)] 준설, 조경(조경관련 전문 포함), 택지조성(경 정리포함),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(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: 일반건설(갑) 적용)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※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준 (노동부 고시 제2020-63호, 2020.1.23.) □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, ()은 2000.7.31.이전 (‘정부입찰계약직업기준’ 제9조) -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.75%(85%)미만인 경우: 87.75%(85%) - 추정가격10억 ~ 50억미만으로 86.75%(83%)미만인 경우: 86.75%(83%) - 추정가격50억 ~ 100억미만으로 85.5%(80%)미만인 경우: 85.5%(80%)											
[산재보험료] (노) x 3.7 * 모든 건설공사 적용, 노동부 고시 제2020-145호(2020. 12. 29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8-462호, 2018.7.26.)						[환경보전비] (직접공사비) x 율 구분 도로(예시: 교량, 터널, 활주로 등) 0.9 플랜트(예시: 발전소, 쓰레기소각장 등) 0.4 지하철 0.5 철도 1.5 상하수도(예시: 폐수, 하수처리장, 정수장 등) 0.5 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1.8 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 0.8 댐 1.1 택지개발 0.6 기타 토목(하천 등) 0.8 주택(재개발, 재건축) 0.7 주택(신축) 0.3 주택 외 건축 0.5 조경, 기타(전문, 개보수 공사) 0.3						[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] (직접공사비) x 율 공사규모(추정가격) 구분 50억 미만 0.081 50억 이상 - 100억 미만 0.080 100억 이상 - 300억 미만 0.075 300억 이상 중시-중평제(토목 및 산업설비) 0.071 300억 이상 중시-중평제(건축) 0.068 터키-대안공사 0.084 * 적용제외: 전문공사, 문화재수리공사 *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6-921호, 2016.12.19.)											
[고용보험료] (노) x 율 공사배정규모(추정금액) [1등급] 1200억 이상 1.39 [2등급] 1200억 미만 ~ 950억 이상 1.17 [3등급] 950억 미만 ~ 550억 이상 0.97 [4등급] 550억 미만 ~ 400억 이상 0.92 [5등급] 400억 미만 ~ 220억 이상 0.89 [6등급] 220억 미만 ~ 130억 이상 0.88 [7등급] 130억 미만 ~ 81억(고시금액) 이상 0.87 *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, 국토부 고시 제2018-462호(2018.7.26), 고용보험법 시행령 * 총공사금액(도급금액+관급금액)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 시 미 ※ 등급기준: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(조달청 공고 제2019-244호, 2019.1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8-462호, 2018.7.26.)						*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(국토부 고시 제2018-528호, 2018.8.30.) (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)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: 운영·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 시장단가,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(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) 시험검사비, 점검비, 교육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에 관련한 금액을 반영하고,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*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 문화재 수리공사						[공사이행보증수수료] 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 70억 미만 [직공비x0.0355%]x공기(년) 70억이상~120억미만 [2백만원+(직공비-50억)x0.0235%]x공기(년) 120억이상~250억미만 [4백만원+(직공비-140억)x0.0193%]x공기(년) 250억이상~500억미만 [6백만원+(직공비-250억)x0.0159%]x공기(년) 500억 이상 [10백만원+(직공비-500억)x0.0126%]x공기(년) *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- (시행령 제42조 제1항)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- (시행령 제6장) 대형공사계약(대안입찰, 일괄입찰), 특정공사의 계 - (시행령 제9장)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											
[건강보험료] (직노) x 3.43		[노인장기요양보험료] (건강보험료) x 11.52		[연금보험료] (직노) x 4.5																			
* 공사기간 1개월(30일)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8-462호, 2018.7.26.)						[퇴직공제부금비] (직노) x 2.3 *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※ 국토부 고시 제2015-610호(2015.8.20.) 요율 적용 □ 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,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(단,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<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>을 기준으로 함)																	

위 적용기준 중 법정경비의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를 생략합니다.